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87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안일자 : 2020년 10월 16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2. 제안이유

○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부시장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은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과지표 달성도, 행정수요의 지속성, 기능수행의 효율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삭제 또는 자율신설기구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조의2).

○ 부시장 업무배분 및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행정⑴부시장, 행정⑵부시장 및 정무부시장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안 제4조).

1) 행정(1)부시장은 경제정책실·복지정책실·도시교통실·문화본부·기후환경본부·행정국·재무국·평생교육국·관광체육국·시민건강국의 소관 사무와 다른 부시장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분장함.

2) 행정(2)부시장은 안전총괄실·도시재생실·도시계획국·주택건축본부·푸른도시국·물순환안전국·지역발전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함.

3)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언론·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및 소통, 국회·시의회 협조, 정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2019년에 신설한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존속기한 만료 전에 연장・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부시장(행정1, 행정2, 정무)의 업무배분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근거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서울시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기구정원 규정')에 따라 16~18개 실・국・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례로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추가・설치(이하 '자율신설기구')할 수 있음.[1)]

- 이러한 특례 기준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3개의 자율신설기구(2019.07.25. ~ 2021.07.24.)를 추가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음.

---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이들 자율신설기구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존속 가능하며, 존속기간 전에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 삭제 또는 기구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지방기구정원 규정' 제9조의2).

○ 개정안은 '지방기구정원 규정'의 개정사항(2019.4.30.)에 맞춰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과 평가항목, 평가절차와 평가결과의 조치(연장, 삭제, 폐지)를 규정하고 있음.

'지방기구정원' 규정	조례 개정안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③ 시·도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의2(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본부·국(이하 "자율신설기구"라 한다)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는 "성과평가"라 한다)는 성과지표 달성도, 행정수요 지속성, 기능수행 효율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실시한다. ③ 성과평가를 위해 각 자율신설기구는 평가 관련 자료를 조직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자율신설기구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성과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자율신설기구는 지방분권 실현 차원에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정된 기간 동안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엄중한 관리가 요구됨.

○ 그 동안 자율신설기구의 운영성과를 판단할 독자적인 기준이 없어 조직의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통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구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자율신설기구의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 효과가 있게 됨.

○ 한편, 자율신설기구가 행정수요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역점 사업 등과 관련된 경우 자칫 조직 확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성과평가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임.

다. 부시장의 사무분장 조항 신설(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을 보좌하는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의 사무분장을 조례에 규정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음.

○ 그 동안 부시장의 업무분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왔으나, 이를 조례에 상향 규정하여 부시장별 업무배분과 역할을 명확화함

으로써 의회의 통제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그러나, ‘지방기구정원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보조기관)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는 해당 “조례”로 규정(제9조)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보좌기관과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규정(제11조)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조례상의 부시장별 사무분장에 ‘실·국·본부’ 조직 이외 ‘보좌기관’은 표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과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비교>

구분		개정안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행정1 부시장	보조기관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좌동
	보좌기관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민생사법경찰단
행정2 부시장	보조기관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좌동
	보좌기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기술심사담당관
	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정무 부시장	보조기관		
	보좌기관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 이처럼 부시장의 사무분장 규정을 조례에 상향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사무 분장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신중한 입법적 검토가 요구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02-2180-8055